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0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0일

발 의 자 : 우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이종필, 이석주, 남재경,
김용석(서초), 이승로,
김희걸, 성중기, 이해경,
김기대, 서윤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관할 지역”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해외”를 “국외”로 하며 “매 회의마다”를 “회의마다”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빚공해 방지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측”을 “위측 해제”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해외”를 “국외”로 하며 “해측을”을 “위측 해제를”로 한다.

제16조 중 “매 회의마다”를 “회의마다”로 하고, 제19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증설하고자 하는”을 “증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량”을 “다리”로 한다.

제25조 중 “정도”를 “정밀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u>관할 지역</u>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u>강구</u>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u>관할지역</u>----- ----- ----- ----- ----- <u>마련</u>-----.</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u>관할 지역</u>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 ----- ----- <u>관할지역</u>----- ----- -----.</p>
<p>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u>당해</u>위원을 <u>해촉</u>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1. 위원이 장기간의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u>해외여행</u> 등으로</p>	<p>제14조(위원의 <u>위촉 해제</u>) ----- ----- ----- <u>해당</u>----- ----- <u>위촉 해제</u> ----- ----- -----.</p> <p>1. ----- <u>치료가 필요한</u>----- ----- <u>국외</u>-----</p>

- 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생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생략)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

2. ----- 위촉 해제를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회의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
-----대해서는 ----- 범
위에서 -----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

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생략)

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

증설하려는

②

대해서는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하려는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리

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 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 조명의 균제도(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말한다)를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

정밀도-----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 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 미 경